

# 정례브리핑

2021.4.19.(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는 대북정책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분권·협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참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일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수요일, 4월 21일 오전 10시에 2021년 제1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되었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관련 정책협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도 법정기구로 격상되었습니다.

지자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인사가 참여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법정 기구가 된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첫 회의인 만큼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수요와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 하고, 지자체의 여러 제언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통일부 장관 모두 발언까지 공개되고, 주요 논의 사항은 회의 후에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4월 23일에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통일부와 전라남도 간 업무협약이 체결됩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류협력과 북한 연구 등의 지역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에 설치되는 종합지원 플랫폼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통일 교육, 교류협력, 탈북민 지원 인프라 등은 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이러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등을 통합 연계해서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통일부는 2018년 9월 인천 지역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처음 설치해서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센터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호남과 강원권 2곳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첫 출발점으로 이번 주에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라남도과 체결하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전남도청

을 방문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예정지도 방문하게 됩니다.

정부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통일 분야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기구이자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계기에 다음 날인 4월 24일 토요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기타 일정으로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다음 날인 4월 20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4월 22일 목요일 차관회의 참석 일정과 4월 23일 천태종 주관 ‘다시 평화다’ 개성 사진전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북한의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응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고요. 북한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을 보도한 사례는 몇 차례 있습니다.

<질문> 오늘 자 조간에서 모 매체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대북 라디오방송도 규제할 수 있다는 보도 내놨는데요. 통일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북 라디오방송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은 이러한 규정 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넷 등의 수단으 로 송수신하는 파일 이런 게 포함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파일 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그때 당시 이유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통일부께서 설명 자료하고 해석 지침까지 내주셨는데,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은 ‘전단 등 살포’ 같은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서 이 조항 이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사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런 것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북라디오도 포함될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향후에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 해석 지침이나 이런... 그런 것을 내서 명확히 하는 절차를 다시 거치실 생각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개정안 조항을 보시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2조 정의 조항 중 반출·반입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반출·반입에 대한 정의 규정에는 남북을 오가는 물품의 이동만 포함이 돼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거래방식이나 교류환경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물품의 이동이 주된 반출·반입의 대상이었다면 점차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반입·반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물품의 이동에 해당하는 반입·반출 규정을 준용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출·반입 승인을 받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30여 년 만에 관련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돼 왔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 규정의 정의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반출·반입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거래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미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요. 여기 안에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법을 앞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외무역법 등을 기준으로 볼 때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는 소프트웨어법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 등을 전자적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실상 통일부가 최근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들을 해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것은 보면 얼핏 들었을 때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규제를 가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개정안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런 기술 발달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찌 됐든 이것은 좀 어떻게 촉진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추진하게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의원입법 등을 통해 부분적인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정부가 전반적인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개정안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 환경과 방식의 변화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출·반입의 경우에도 단순히 물자가 오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책자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적인 형태로 반출·반입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적 같은 것을 물리적인 형태의 서적이 아니라 파일 형태로 반입하는 경우들도 이미 있어 왔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반출·반입 조항을 준용해서 반출·반입 승인을 이미 받도록 조치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 고요.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끝>